상주시 공고 제2023 - 1043호

「상주시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7월 12일

상 주 시 장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정비 및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납부 방법 등 신설(안 제16조)

1) 「건축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던 건축허가 신청이나 건축신고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면서 조례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어[시행(2023. 5. 3.)], 수수료 납부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

나.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조정(안 제16조)

1)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는「건축법 시행규칙」별표 4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조정.

3. 개정조례(안): 붙임참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8월 1일까지 상주시장(참조: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일반우편: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 상주시청 건축과

2) 전자우편: wldus4662@korea.kr

3) 팩　　스: 054-537-6367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 건축과(☎054-537-76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경상북도 상주시 홈페이지(www.sangju.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상주시 건축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